

1. 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각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조달시스

템”으로 한다.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3항 중 “영 제76조제10항”을 “영 제76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76조제11항에”를 “영 제76조제12항에”로, “영 제76조제11항”을 “영 제76조제12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을 “품질·수급상황·공사규모·공사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을 “인증제품인”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있으며,”를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감경 후 잔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로 줄일 수 있다”로 하고, 별표 2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나. 국가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다. 국가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6개월
라. 국가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3개월

별표 3 표 중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를 제9호부터 제14호,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 3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0%
나. 국가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5%
다. 국가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3%
라. 국가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5%
7.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5%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3%
8. 영 제76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연평균 계약금액”을 “연평균 이행완료금액”으로 하고, “총 계약금액”을 “월평균 이행완료금액을 총 개월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5호 중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을 “이행

완료금액은 총 이행완료금액을 총 이행개월 수”로 한다.

별표 4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30%
나. 국가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5%
다. 국가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9%
라. 국가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4.5%

별표 4 비고 제4호 중 “연평균 계약금액”을 “연평균 이행완료금액”으로
하고, “총 계약금액”을 “월평균 이행완료금액을 총 개월수로 곱한 금액”
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5호 중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을 “이행
완료금액은 총 이행완료금액을 총 이행개월 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생략)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구매(<u>「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u>): 100분의 25	2. ----- <u>「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용역(<u>「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u>	4. --- <u>「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소</u>

<u>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u> <u>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u> <u>을 제외한다</u>) : 100분의 10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략) 다.·라. 삭제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단서 신설>	<u>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u> <u>기준</u>----- -----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마. ----- ----- ----- ----- ----- ---. <u>다만, 「전자조달의</u> <u>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u> <u>률」 제2조제4호에 따른</u> <u>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u> <u>(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u> <u>라 한다) 을 이용하여 서류</u> <u>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u> <u>출하지 아니한다.</u>
---	---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마. (생략)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략)

다.·라. 삭제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③·④ (생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서
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

가.·나. (현행과 같음)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서
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전자조달시

스템-----

-----.

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
다.

⑥ ~ ⑧ (생략)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76조제10항에 따른 게재
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
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영 제76조제11항에 따른 공
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
업자제재확인서(영 제76조제11
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전
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
으로 한다.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
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6조제11항-----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76조제12항에 -----

-----영 제76조제12
항 -----

-----.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
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
우로서 다음 -----.

1. 자재의 <u>품질 · 수급상황 · 공사현장</u>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u>인증제품</u>으로서 다른 <u>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u> ② (생략)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u>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1. ---- <u>품질 · 수급상황 · 공사 규모 · 공사현장</u> ----- ----- -- 2. ----- ----- ----- -- <u>인증제품인</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 ----- 「<u>소프트웨어 진흥법</u>」 제2조 제3호-----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